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위협의회 운영 규정

제정 2012. 3. 1. 개정 2017. 6. 14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예비군법」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를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방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방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향토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의 지원
  - 2.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지원
  - 3.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앙양과 민·관·군 간의 유대강화
  - 4. 향토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
  - 5.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이 제출한 안건
- 제3조(구성) ① 협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각 대학(원)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예비군연대장이 된다.
  -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총무과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
-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- 제4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회의)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  -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지원범위) 직장예비군을 지원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- 1. 교육훈련지원
    - 가. 교육훈련 예산지원
    - 나. 대학직장예비군 사기앙양(예비군 훈련 지원, 협의회(의장) 훈련장 위문 등)
    - 다. 훈련지원 교관 표창과 격려
  - 2. 조직 활성화 예산지원
    - 가. 예비군 지휘관 직책수당과 부대 운영비 지원
    - 나. 예비군의 날 부대 격려
    - 다. 우수예비군 표창(총장표창 및 기념품 수여)
    - 라. 대학직장예비군협의회 유대 강화 지원
    - 마. 그 밖에 예비군 지휘관 건의사항
  - 3. 예비군의 육성ㆍ지원
    - 가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· 운영 및 유지

- 나.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자의 지원
- 다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칙(제40호, 2012. 3.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75호, 2017. 6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